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94
----------	------

2024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이은림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은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금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 또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의2)
- 2)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의 학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2022년 10월 제정된 바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등¹⁾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된 바 있음.
- 반면, 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은 동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를 금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제2조(정의)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세부적으로 안 제18조의2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 제34조의5를 준용하여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한편, 법 제8조의3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와 법 제22조의2 ‘지정 관리 야생동물’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체화되면 서울시 정책 현황에 맞게 추가로 개정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u> <u>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u> <u>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u> <u>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p> <p><u>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u> <u>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u> <u>법으로 죽이는 행위</u></p> <p><u>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u> <u>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u> <u>죽이는 행위</u></p> <p><u>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u> <u>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u> <u>하는 행위</u></p> <p><u>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u> <u>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u> <u>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u> <u>상처를 입히는 행위</u></p> <p><u>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u> <u>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u> <u>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u> <u>등을 설치하는 행위</u></p> <p><u>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u></p>

<신 설>

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
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
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
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
을 학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
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
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
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
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
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
물의 피해방지)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
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

2. (생 략)

③·④ (생 략)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
물의 피해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서
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